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옥상 바닥 에폭시 공사

과업지시서

2021. 4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목 차

I . 과제명

II . 과업의 목적

III . 과업내용

IV . 계약금액

V . 용역비 지급방법

VI . 계약효력

VII . 일반사항

VIII . 기타사항

I . 과제명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옥상 바닥 에폭시 공사

II . 과업의 목적

MERC 관리동 옥상 바닥 노후로 파손되어 사무동에 누수가 발생함.
컴퓨터 누전 등 계량 오류 등 식별 가능한 위험(Known unknown Risk)
을 제거하고자 에폭시 공사를 추진코자함. (Severity → Priority)

III . 과업내용

1. 과업기간

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2. 공사용역 범위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옥상 바닥 공사에 관하여 공사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으로 한다.

1) 관리동 옥상 바닥 epoxy paint ($535m^2$)

- 관리동 옥상 바닥 에폭시 (우레탄 방수공사 : 누수방지)
- 옥상 바닥 우레탄 부식 철거후 재시공(폐자재 반출 포함)

2) 환기장치(2곳) 신규 교체

※ 환기장치는 A급 기성품 교체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공급처에서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IV. 배정예산 [VAT별도]

공사 용역 행위에 대한 예산(이하 “공사용역비”라 한다.)은 금 삼천 오백만원(₩35,000,000원)으로 한다.

V. 용역비 지급방법 [VAT별도]

공사용역비의 지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 가) 선수금 : (계약금액의 30%)
- 나) 중도금 : (계약금액의 0%)
- 다) 잔 금 : (계약금액의 70%)

VI. 계약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VII. 일반사항

1) 착수

시공자는 계약 후 견본 시공 후 당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시공한다.

2) 진행보고

시공자는 진행 중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요청 시 “을”은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완료 전에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한다.

3) 감독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시공하자

시공자는 시공하자 발생시 즉각 조치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다.

VIII. 기타사항

- 1) 현장설치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한정한다.
- 2) 시설물 공사를 위한 장비는 사전 승인 후 출입한다.
- 3) 계약금액에 안전 관리비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 4) 공사전 공사 일정표를 사전 제출토록 한다.
- 5) 공사진행 검토는 센터 및 조합에 최종 점검 후 대금지불 토록한다.
- 6) 공사인력에 대한 안전관리 등 사전허가를 득한후 실시한다.
- 7) 하자보수는 2년으로 한다.
- 8) “갑”은 아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가. “을” 의 실정 변화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나. 당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진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공사성과를 만족하게 기대 할 수 없을 때.
 -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9) 모든 자재는 KS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10) 공사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 발생시 주변 정리 및 공사 잔재물의 처리는 “을”이 완벽히 처리토록한다.
- 11) 계약 전/후에도 상호간 충분히 논의(Meeting)하여 공사계획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력하며, 기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 계약당사자에게 알려 협의하여야 한다

유첨 1

수도권자원순환센터 관리동 옥상 방수공사 前

	⇒	
옥상 바닥 도색 <u>前</u>		옥상 epoxy paint ($535m^2$)
	⇒	
관리동 옥상 바닥 코너 부식		우레탄 방수 (부식)
	⇒	
노후 환기시설 2곳		환기시설 신규 교체 추진